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안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지역축제장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“지역축제”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축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고시는 지역축제장에서 임시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0조제2항나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와 같은 조항 제9호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의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0조제2항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,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.

② 이 고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축제장의 사용시설에 적용하며,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기간은 축제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완성검사)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미 완성검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.

②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

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.

제5조(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 지역축제장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6조(기준의 준용)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제7조(재검토기한) 산업통상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별표] <신 설>

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

1. 시설기준

가. 저장설비기준

1) 저장설비는 500kg 이하의 용기로만 설치할 것.

2) 용기(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)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둘 것

3) 2개 이상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옥외에 설치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하고, 1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조치를 할 것

4) 용기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그 용기보관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

5) 용기,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,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

나. 가스설비기준

1) 압력조정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가) 사용시설에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

나)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, 조정압력 및 최대유량은 연소기의 사용압력에 충분한 것으로 할 것

다) 용기에 직결하지 않는 형식의 압력조정기는 조정기의 입구부에

재액화된 액화석유가스나 이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용기밸브 보다 0.05ｍ 이상 높게 설치할 것

2)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가) 사용시설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것. 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여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나) 가스계량기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, 열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

다) 가스계량기는 밴드·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할 것. 다만, 설치높이는 제한하지 않는다.

3) 중간밸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가)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

나)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하되, 조작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것

다) 압력조정기 출구측 배관에는 압력조정기와 접하도록 배관용밸브 및 압력측정기구 접속 이음관(이하 “가압구”라 한다)을 설치할 것.

라) 2개 이상의 천막 또는 영업장으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천막 또는 영업장의 주배관마다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것

4) 호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
가)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설치하고, T형으로 연결하지 않을 것

나) 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

다) 호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않을 것. 다만, 보행자의 통행으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고정목이나 방호철판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통로에 설치할 수 있다.

라) 호스는 노출하여 설치하고 다른 천막 또는 영업장의 시설과 연결되지 않을 것

다. 배관설비기준

1)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·동관으로 할 것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가)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: 일반용 고압고무호스(트윈호스·측도관 만을 말한다)로 설치

나) 중간밸브에서 연소기까지: 호스 또는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

2) 배관은 노출하여 설치할 것. 다만,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.

가) 배관을 매몰하지 않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(은폐 설치를 말한다)

나) 하수구 등 암거 내부

3) 배관은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그 관경이 13mm 미만인 것은 1m마다, 13mm 이상 33mm 미만인 것은 2m마다, 33mm 이상인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. 다만, 모래사장 등 배관 고정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) 보행자의 통행으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고정목이나 방호철판 등으로 방호조치를 할 것

5)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(사용압력은 3.3㎪ 이하로 한다)는 다른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와 연결하지 않으며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

6)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플러그, 캡 또는 플랜지로 막음조치를 할 것

7) 배관은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할 것. 다만,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폭 0.03m의 노란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8) 배관이음부(용접이음매는 제외하고, 배관과 호스의 접속부를 포함한다)와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,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, 절연조치를 한 전선(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)과의 거리는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

라. 연소기 기준

1) 연소기는 화재,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

2) 연소기는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설치할 것.

3)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천막 또는 영업장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구조일 것

4)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설치는 GC208에 따를 것. 다만, 반밀폐식 가스보일러(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는 가스보일러) 및 개방형 가스온수기(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)는 설치하지 않는다.

마. 사고예방설비기준

가스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기를 설치한 천막 또는 영업장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1)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등이 설치되어 있고,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

2)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

3)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도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바. 용품의 사용 제한

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

2. 기술기준

가. 안전유지기준

1)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,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℃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

2)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로부터 2m 이내에서는 흡연 및 과도한 화기 사용 등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

3)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용기 분리 또는 접속을 하지 않을 것

4) 가스사용시설에 연결된 용기 외에 다른 용기를 두지 않을 것

나. 점검기준

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,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다. 수리·청소 및 철거 기준

가스시설을 수리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작업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

3. 검사기준

가. 완성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으로 할 것

나. 완성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

다. 이상의 검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GS FU431에 따를 것